

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 대한 미합중국 유보목록

미합중국 유보목록을 위한 서설

1. 이 부속서의 미합중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 내지 5목과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미합중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3.2조(내국민 대우)
 - 2) 제13.3조(최혜국 대우)
 - 3)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 접근)
 - 4) 제13.5조(국경간 무역), 또는
 - 5) 제13.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3.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미합중국이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또는 제13.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유보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13.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이 부속서 13-나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한도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3.9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미합중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3.2조·제13.3조·제13.4조 또는 제13.5조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8조(이행 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제12.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3.5조제1항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두 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이 하위분야의 내국민 대우 약속은 다음의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 가. 은행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국제은행법이 적용가능한 경우, “모주(母州)”라는 용어가 그 법에 따라 정의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에서 외국은행의 “모주”에 기초하여 제공될 것이다.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은행은 자신의 “모주”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내국민 대우는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결정되는 대로 그 자회사의 모주에 기초하여 제공될 것이다.¹⁾
 - 나. 보험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미합중국에서, 적용가능한 경우, 비-미합중국 보험금융기관의 소재지주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소재지주는 개별주에 의하여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보험업자가 미합중국에서 설립되거나, 조직되거나,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유지하는 주가 된다.
3.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미합중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공급하고 미합중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²⁾
4. 미합중국은 제13.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제13.9조(비합치조치)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 방식으로 제한한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3.9조제1항다호는 제13.4조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3.4조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국 은행 기관은 내국민 대우를 기초로 미합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자리적 및 그 밖의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한 제한이 내국민 대우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합치 조치로 기재되었다. 예시의 목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에 따라 다음 상황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비합치 조치로 기재될 것이다: 특정 모주로부터의 외국은행이 지점 개설에 의한 확장에 대하여 그 주로부터의 국내은행이 받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2)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미합중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1 절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72조

유보내용 전국은행의 모든 이사는 미합중국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다만, 통화감독청장은 이사 총원의 절반 미만에 대하여 시민권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619조

유보내용 예지 회사들의 외국인 소유권은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의 미합중국 내 자회사에 한정된다. 반면, 국내 비은행 기업은 그러한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1463조 이하 및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1751조 이하

유보내용 연방법 및 주법은 미합중국에서 신용조합, 저축은행 또는 저축조합(후자 두 실체는 저축기관으로도 지칭될 수 있다.)이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회사의 지점을 통하여 설립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3104(d)조

유보내용 미화 십만 달러보다 적은 국내 소매 예금을 수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은행은 부보된 자회사인 은행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1991년 12월 19일자로 부보 예금수취 행위에 종사하였던 외국은행 지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 전 제15권 제80b-2조, 제80b-3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이 미합중국에서 유가증권 자문 및 투자관리 서비스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도록 요구된다. 반면, 국내은행³⁾(또는 그 은행의 별도로 확인가능한 부서 또는 지부)은 등록된 투자회사를 자문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 등록 요건에는 기록 유지 · 검사 · 보고서 제출 및 수수료 지급을 포함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은행"은 외국은행의 미합중국내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221조, 제302조, 제321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 선임시 투표할 수 없다. 외국인 소유 자회사인 은행은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36(g)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828(d)(4)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831u(a)(4)조

유보내용 미합중국은, 외국은행이 지점을 설립하거나 은행 전체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은행 지점을 인수함으로써 자신의 "모주"로부터 다른 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13.4조 나호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모주라는 용어는 적용가능한 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이 유보목록의 다른 곳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확장은 두주 제2항가호에 따른 내국민 대우를 기초로 허여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1831u조

유보내용 이 유보목록의 다른 곳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의 "모주" 밖에 위치한 은행과의 합병에 의한 지점 설립을 통한 외국은행의 주간 확장은 두주 제2항가호에 따른 내국민 대우를 기초로 하여된다. 모주라는 용어는 적용가능한 법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3102(a)(1)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3103(a)조, 미합중국법전 제12권 제3102(d)조

유보내용 외국은행의 연방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립은 외국은행에 의한 지점 또는 대리점의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다음의 주에서 가능하지 아니하다.

- 지점 및 대리점은 앨라배마, 캔자스, 메릴랜드, 노스다코타 및 와이오밍에서 금지될 수 있다.
- 지점은 델라웨어,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오클라호마, 텍사스 및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금지될 수 있으나, 대리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권한에 대한 특정 제한은 연방 대리점에 적용된다.

주 : 인용된 연방 조치는 특정 주법 제한이 연방 지점 또는 대리점 설립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5권 제77jj(a)(1)조

유보내용 미합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약정서의 단독 수탁자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은 상호주의 심사의 적용대상이 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22권 제5341조 내지 제5342조

유보내용 미합중국 정부채의 국고채전문딜러로의 지명은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한다.⁴⁾

4) 정부채 증서의 인수 및 유통에 있어 국내 회사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경쟁기회를 미합중국 회사에 부여하는 국가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그 기업이 연방준비위원회에 의하여 설정된 적용가능한 영업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국고채전문딜러로서 지정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다. 그러한 국가가 미합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국가가 자국 정부채 시장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에 대한 비합치 조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은 그러한 기업의 지정 요청을 고려함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3.3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5권 제780(c)조

유보내용 미합중국 법에 따라 등록되고 캐나다에 자신의 주영업소가 있는 중개매매인은 자신의 지급준비금을 캐나다의 감독 대상이 되는 캐나다 내의 은행에 보유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421조 이하(연방 주택대출 은행),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451조 이하(연방 주택대출 모기지 회사),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1717조 이하(연방 전국 모기지 협회),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2011조 이하(농장 신용 은행), 미합중국법전 제12권제2279aa-1조 이하(연방 농업 모기지 회사), 미합중국법전 제20권제1087-2조 이하(학생대출 마케팅 협회)

유보내용 미합중국은 위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부지원기업에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기업의 자본금, 준비금 및 소득은 특정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정부지원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연방 증권법 상의 등록 및 정기적인 보고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 미합중국 재무부는 자신의 재량으로 정부지원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분 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최혜국 대우(제13.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지역

조 치 모든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기준의 비합치 조치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미합중국법전 제31권 제9304조

유보내용 외국 보험회사의 지점은 미합중국 정부 계약에 대한 보증서 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국경간 무역(제13.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연방규정집 제46권 제249.9조

유보내용 연방 보증 모기지 기금으로 선체가 건조된 해상 선박의 가치가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비-미합중국 보험회사에 의하여 부보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위험이 실질적으로 미합중국 시장에 우선 인수 제의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3.2조)
최혜국 대우(제13.3조)
국경간 무역(제13.5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3.8조)

정부수준 지역

조치 모든 주, 콜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제 2 절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3.4조)

정부수준 모두

조치

유보내용 미합중국은 GATS 제16조상의 미합중국의 의무와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